#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

(전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5860 발의년월일 : 2020. 10. 26 발 의 자 : 전경원 의원 가미구 의원

강민구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김재우 의원 박감상 의원 이만규 의원 이태손 의원 정천락

### 1. 제안 이유

○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나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육정책"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이 수립하 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,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과 폐지를 말한다.
- 2. "교육갈등"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.
- 3. "이해관계인"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 영을 받는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일반시민(교육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한다)을 말한다.
- 4. "갈등관리"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5. "갈등영향분석"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및 분석하고, 예상되는 교육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,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정책 추진 등으로 발생하여 대구교육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갈등으로 한다.
  - 1.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
  - 2.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갈등영향분석)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
  - 2.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
  - 3.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
  - 4.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
  - 5.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
  - 6.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계획
  - 7.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

수 있다.

- 제6조(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)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갈등조정협의회)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 담당부서별로 갈등조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, 전문가로 구성된 5명 이상 15명의 이하의 위원을 사안 담당부서가 위촉하여 구성하고,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합의로 선정한다.
  -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. 단,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.
- 제8조(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)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 -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
  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9조(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·운영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

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- 1. 협의회 참여 등 자문
- 2.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·법령·제도·문화 등의 조사·연구
- 3.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·보급
- 4.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- 5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·연구
- 6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·연구
- 7.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에 필요한 사항
- 제10조(비밀유지)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, 협의회 구성원,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1조(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)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.
- 제12조(수당지급 등) 교육감은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 령

###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·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갈등"이라 함은 공공정책(법령의 제정·개정,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·추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.
  - 2. "갈등영향분석"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다.
- 제3조(적용대상)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(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4조(중앙행정기관의 책무)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 한다.
  -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  -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·반영하여야 한다.

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

- 제5조(자율해결과 신뢰확보)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참여와 절차적 정의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이해 관계인·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익의 비교형량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·형량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정보공개 및 공유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갈등의 예방

- 제10조(갈등영향분석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
  - 2.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
  - 3.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
  - 4.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
  - 5.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
  - 6.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
  - 7. 그 밖에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

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 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 12. 24., 2012. 7. 20., 2016. 1. 22.>

제11조(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)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 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-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.
-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제1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  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
  - 3.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
  - 4.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
  - 5.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
  - 6. 갈등의 예방·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4조(심의결과의 반영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·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5조(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·일반시민

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

- 제16조(갈등조정협의회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 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(이하 "협의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.
  -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
  -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- 제18조(의장의 역할)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·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의장의 선임)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 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0조(협의회의 기본규칙 등)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.
  -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.
  - 1. 협의회의 목적
  - 2. 당사자의 범위
  - 3. 협의회 의장의 선정
  - 4. 진행일정
  - 5. 협의의 절차
  - 6. 협의결과문의 작성

- 7.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
-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21조(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)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
  -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2조(협의회 절차의 공개)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 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- 제23조(비밀유지)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#### 제5장 보칙

- 제24조(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・운영)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1.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
  - 2. 갈등의 예방·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·보급
  - 3.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  - 4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
  - 5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 · 연구
  - 6. 그 밖에 갈등의 예방 · 해결에 필요한 사항
  -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)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.

-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·보완할 수 있다.
- 제26조(갈등관리실태의 점검·보고 등)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 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·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·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.
  -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) 「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」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「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」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8조(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)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,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.
- 제29조(수당지급 등)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 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할 수 있다.